

(33)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(조특령 §115)

— < 법 개정내용(§117) > —

-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시장조성자에 지수선물·옵션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 추가  
(적용기한 '18.21.31.)
- 시장조성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정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</li> </ul>
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 시장조성자의 정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시장조성자의 정의 구체화

**<적용시기>**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